

『2021 호국수호 유공자 가족 초청 제주탐방행사』 참여자 모집

(주)포아시스에서 포스코1%나눔재단의 후원으로 2021년 10월까지 「호국수호 유공자 가족 초청 제주탐방행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은 호국수호 유공자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호국수호 유공자 가족 초청 제주탐방행사」에 참여하실 가족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포항시에 거주하고 계신 호국수호 유공자 유가족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개 요

- 사업 제목 : 호국수호 유공자 가족 초청 제주탐방행사
- 사업 대상 : 포항시 거주 호국수호 유공자 및 유가족
- 대상 인원 : 호국수호 유공자 및 유가족 10 가족 (가족당 4인 이하)
- 사업 기간 : 2021. 10. 15. ~ 2021. 10. 17. / 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 사업 일정 * 일정은 코로나19 재유행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06.21.(월) ~ 07.18.(일)	E-mail 또는 방문접수
서류평가	07.19.(월) ~ 07.29.(목)	(주)포아시스, 포스코
대상자 발표	07.30.(금)	개별 연락
사전프로그램	08~09월 중	개별 연락
제주여행	10.15.(금) ~ 10.17.(일)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06. 21.(월) ~ 2021. 07. 18.(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poasis@poasis.co.kr <E-mail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 방문접수 시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10번길 34-2 303호
 - * 메일 주소는 반드시 “000000(사업명)_성함”으로 기재
 - * 기타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

3. 신청자격

- ① 현 거주지가 포항시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가정
- ②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포항시 거주 1개월 이상만 가능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2**” 참조

4.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접수기한 엄수**.
- 사업 대상자 선발 및 진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예정.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증빙자료 미제출 시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모든 참가자는 전 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5. 제출서류

구분		부수	참고
신청 서류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3개 서류 모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약서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사항 포함 - 민원24(인터넷)발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발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독립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중 1부	1부	- 민원24(인터넷)발급 또는 각 보훈(지)청
	가족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증 앞/뒷면

6. 문의사항 [평일 09:00~18:00]

(주)포아시스 여행 사업 담당자 최서우 차장 ☎ 070-4282-4891

[별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대상 법률	대상	증빙서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 6.25및월남전쟁).(참전고엽제)	참전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참전고엽제)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별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5조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